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매뉴얼

2021. 1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I.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1. 취업심사대상자	6
※ 참고1. 취업심사대상자 현황	7
※ 참고2. 한국표준직업분류	8
2. 취업제한기간	9
3. 취업의 범위	9
4. 취업심사대상기관	10
※ 참고3. 2021년도 취업심사대상기관 현황 및 적용 대상	12
5. 취업심사 신청·처리 및 취업심사의 종류	13
※ 참고4. 취업심사 업무 흐름도	15
6. 우선취업 신청, 결정 및 사후 처리	16
7. 취업여부 확인 및 취업제한 위반자 조치	17
※ 참고5. 고발여부 심사 업무 흐름도	18
※ 참고6.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19

II.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기준

1. 작성근거	22
2. 심사방향 및 기본원칙	22
3. 밀접한 업무관련성의 범위	24
4. 취업심사대상자별 심사기준	32
(1) 2급 이상 공직자	32
※ 참고7. 재산공개자 현황	34
(2) 3급 이하 공직자	35

5. 취업심사대상기관별 심사기준	36
(1) 영리사기업체	36
(2) 협회	36
(3)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38
(4) 시장형 공기업 및 공직유관단체	39
(5) 사립대학, 종합병원, 사회복지법인 등	40
6. 취업승인 심사기준	41
(1) 일반원칙	41
(2)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 적용범위	41
(3)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취업승인 하는 경우	50

Ⅲ. 퇴직공직자 행위제한제도

1. 업무취급제한제도	52
(1) 본인 처리업무 취급제한	52
(2)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업무취급제한	53
(3) 업무취급제한 위반자 조치	53
2. 업무취급승인심사	54
(1) 신청 및 처리	54
(2) 업무취급승인 사유 및 심사사례	55
3. 업무내역서 심사	57
(1) 업무내역서 제출 의무	57
(2) 제출 서류	57
(3) 심사 기준	57
4. 취업이력공시제도	59
※ 참고8. 업무내역서 제출절차	61
※ 참고9. 공직자윤리법 개정 연혁	62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1. 취업심사대상자
2. 취업제한기간
3. 취업의 범위
4. 취업심사대상기관
5. 취업심사 신청·처리 및 취업심사의 종류
6. 우선취업 신청, 결정 및 사후 처리
7. 취업여부 확인 및 취업제한 위반자 조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

-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 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확인을 받거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 가능**

※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17조 및 제18조

1 취업심사대상자

● ('20.6.3. 이전 퇴직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였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특정분야 7급 이상 또는 5급 이하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및 특정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등

※ 법령상 당연히 취업심사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재산등록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재산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취업심사대상자임

● ('20.6.4. 이후 퇴직공직자)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의 공직자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업무형에 따른 취업심사 제외(법 제17조제9항) : 비상대비, 예비군부대의 지휘관 업무, 그 밖에 단순집행적 업무로서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시하는 업무

재산등록 및 취업심사대상자 조정내용

① 소방공무원

- 소방위·소방장 중 현장·상황관리업무 담당자 재산등록 제외
- 취업심사대상자는 소방장 이상(현행 유지)

②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직원

- 재산등록대상 : 4급 이상(현행) + 사건부서 소속 5~7급
- 취업심사대상 : 4급 이상(현행) + 5~7급

③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 소속 직원

- 재산등록 및 취업심사 대상 : 임원급(현행) → 수석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

④ 취업심사 완화

- 67급(경감소방경 이하) 취업심사대상자 중 경비·택배원 등 직종*으로 재취업시 취업심사 면제
- * 통계청「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서비스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또는 단순노무 종사자로 취업하는 경우

⑤ 부동산 관련 공직유관단체의 직원(21.10.2. 시행)

- 재산등록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새만금개발공사, 그 밖의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직원
- 취업심사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2급 이상

참고1 취업심사대상자 현황 (법 제3조제1항제1~12호 및 시행령 제31조제1항)

정무직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등						
일반직(별정직 포함)		특정직	군인	경찰	소방	교육공무원	기타
1급 2급 3급 4급			대장 중장 소장 준장 대령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소방총감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준감 소방정	총장,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 전문대학장, 대학에 준하는 학교의 장	검사, 법관, 헌법 연구관
5급	① 국방부·방위사업청 (방위력개선, 국방계약, 군사법원 및 군검찰, 감찰 등)						
5급이하 7급이상	② 감사원, 국세청,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③ 법무부·검찰청 소속 검찰직, 마약수사직 공무원 ④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심사보호국 소속 공무원	중령	경정 경감 경위 경사 (자치경찰 포함)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4급이상 상당 직위의 장학관, 교육연구관, 대학의 처장, 실장	4급이상 상당 직위의 연구관, 지도관, 수석 전문관	
	⑤ 감사업무 담당부서 ⑥ 회계부서의 회계관직 공무원 (물류센터, 유·초·중학교 공무원 등 제외) ⑦ 건축·토목 등 특정분야의 인·허가, 검사·감독, 지도단속 부서 (위원회 승인받은 대민업무 미수행자 제외) ⑧ 식약처 식품위해사범 수사부서 ⑨ 지자체 조세 관련 부서						

공직 유관 단체	임원급	① 공기업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상임감사 ②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위원 ③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④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⑤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상근)
	임원 등	<국방>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직원 (단,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의 경우 수석급 이상 직원*)
	2급 이상	<금융>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원전> 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직원 -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전력기술, 한국전력 공사(원전분야), 한전KPS(원전분야) <철도> 한국철도시설공단 <부동산> 한국토지주택공사**
	4급 이상	<금융> 금융감독원

* '20.7.5.이후 퇴직하는 공직자부터 적용 ** '21.10.2.이후 퇴직하는 공직자부터 적용

참고2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 고시, 2017년)

* 서비스·농림어업·기능원·기계조작·단순노무종사자에 속하는 직업군

분 류		개 요
1	관리자	정부, 기업, 단체 또는 그 내부 부서의 정책과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직무를 수행. 현업을 겸할 경우에는 직무시간의 80% 이상을 다른 사람의 직무를 분석, 평가, 결정하거나 지시하고 조정하는데 사용하는 경우에만 관리자 직군으로 분류 * (예시) 정부기관·기업 부서장, 연구 관리자, 대학 학장, 공장장, 영업지점장 등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개념과 이론을 이용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자문, 지도(교수)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 * (예시) 연구원, 변호사, 의사, 회계 감사역, 산업 안전원 등
3	사무 종사자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보조하여 경영방침에 의해 사업계획을 입안하고 계획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며, 당해 작업에 관련된 정보의 기록, 보관, 계산 및 검색 등의 업무 수행 * (예시) 경영기획 사무원, 영업관리 사무원, 재무 사무장, 보험 심사원 등
4	서비스 종사자	공공안전·돌봄·미용·조리 등 대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 (예시) 경호원, 청원경찰, 주차단속원, 간병인, 조리사 등
5	판매 종사자	영업활동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인터넷 등 통신을 이용하거나, 상점이나 거리 및 공공장소에서 상품을 판매 또는 임대 * (예시) 보험 중개인, 대출상담 모집인, 인쇄 영업원, 건설수주 영업원 등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자기 계획과 판단에 따라 작물을 재배·수확하거나 산림을 경작·보존·개발, 동식물을 양식·채취하는 등의 업무 * (예시) 조경원, 임산물 채취 종사원, 양식원, 해녀 등
7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광업, 제조업, 건설업 분야에서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응용하여 금속을 성형하고 각종 기계를 설치 및 정비하는 등의 업무 * (예시) 용접원, 자동차 정비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제빵사 등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계를 조작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대규모적이고 때로는 고도의 자동화된 산업용 기계 및 장비를 조작하고 제품을 조립하는 업무 * (예시) 자동차 조립원, 전기 및 전자설비 조작원, 철도 기관사 등
9	단순노무 종사자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어떤 경우에는 상당한 육체적 노력이 요구되고 거의 제한된 창의와 판단만을 필요로 하는 업무 * (예시) 택배원, 청소원, 아파트·건물 경비원, 검표원, 가사도우미 등
A	군인	의무 복무 여부를 불문하고 현재 군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자, 예비군 제외

2 취업제한기간

● 퇴직일부터 3년간

- ※ 취업제한규정 위반으로 해임요구한 사안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업제한기간의 진행이 정지됨. 다만, 해임요구 처분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공직자윤리법 제19조제3항)

3 취업의 범위

- 사외이사, 고문, 자문위원 등 직위, 직책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봄(법 제17조제4항)

- 퇴직 전 5년 동안 동일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근무하다가 (1) 퇴직 후 다시 계약직 등으로 재취업하는 경우, (2) 동일 직위·보직에 연임하는 경우 및 (3) 임원으로 퇴직 후 기관장에 공모하는 경우 등은 퇴직 후 원 소속기관에 대한 민관유착 및 부당한 영향력 행사 우려가 없어 심사대상에서 제외('15.7.24. 제242회 위원회, '16.1.29. 제248회 위원회)
- 취업심사대상기관 지정 이후 재계약(재임용) 시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나, 이미 1회 취업심사를 받은 경우 '직위 및 업무에 변동이 없는 단순 재계약'은 다시 심사 받지 않아도 됨('20.11.20., 제309회 위원회, '21.2.26., 제313회 위원회)

예) 공직 퇴직 → 취업심사대상기관 지정 前 최초 채용계약 → 취업심사대상기관 지정 後 재계약(취업심사 받아야 함) → 재계약(취업심사 받지 않아도 됨)

● 영리사기업체 등

-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법률사무소
-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회계법인
- 연간 외형거래액이 50억원 이상인 세무법인
-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합작법무법인
※ 합작법무법인은 '20.6.4. 이후 퇴직하는 취업심사대상자부터 적용

● 협회

-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로서 취업심사대상 사기업체나 취업심사대상 협회가 회원사로 가입하고 있는 협회·조합·연합회(이하 “협회”라 한다) 등
※ 취업심사대상 사기업체나 취업심사대상 협회·단체를 회원사로 둔 협회도 해당(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협회 포함)

● 시장형 공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공기업
※ 2021년도 시장형 공기업 지정현황(기획재정부, 2021.1.29.)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 (주)강원랜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총 16개)

● 공직유관단체

- 안전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 업무와 직결된 공직유관단체
※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1. (안전 감독 업무)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와 관련된 위험을 예방·감소시키는 안전 관리·지도·단속업무
2. (인·허가 규제 업무) 법령에서 정한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의 업무(그와 관련된 조사·검사·평가 등의 업무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3. (조달 업무) 법령에 정한 조달 업무(그와 관련된 품질검사·품질관리 등의 업무 및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 사립대학 등

-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 초등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는 '20.6.4. 이후 퇴직하는 취업심사대상자부터 적용

-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 및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명예교수 등에의 취업은 제외(영 제33조제4항)
- 학교정책결정에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고 단순히 교수 간 순차적으로 보직을 맡는 학과장도 교수로 보아 제외

● 종합병원 등

-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법인

● 사회복지법인 등

-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사업법상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이외의 비영리법인

● 방산·식품·의약품 등 특정분야

-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
- 「방위사업법」 제57조의2에 따라 등록한 군수품무역대리업체 중 최근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57조의4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신고한 업체
-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식품 등 및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과 관련하여 법령에 근거하여 인증·검사·시험·평가·지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

※ 방산·식품·의약품 등 특정분야는 '20.6.4. 이후 퇴직하는 취업심사대상자부터 적용

- 취업심사대상기관 고시 후 공직유관단체에서 지정제외된 경우 공직유관단체 고시에서 제외된 날부터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제외('20.5.29. 제303회 위원회)

참고3 2021년도 취업심사대상기관 현황 및 적용 대상(21,185개)

- 인사혁신처 고시 제2020-15호('20.12.31.), 영리분야 취업심사대상기관
- 인사혁신처 고시 제2020-16호('20.12.31.), 비영리분야 취업심사대상기관
- 인사혁신처 고시 제2020-17호('20.12.31.), 사학·방산·식품·의약품 등 특정분야
- 인사혁신처 고시 제2021-6호('21.6.30.), 취업심사대상 협회

구분		지정기준	대상기관	적용 대상
영리 분야 (16,903)	영리사기업체	자본금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15,819개	모든 취업심사대 상자
	법무법인/회계법인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41개/58개	
	세무법인	연간 외형거래액 50억원 이상	80개	
	외국법자문법률 사무소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4개	
	협회	취업심사대상 영리사기업체(15,819개)가 가입하고 있는 법인·단체(해당 법인·단체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법인·단체 포함)	901개	
비영리 분야 (1,537)	시장형 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공기업	16개	모든 취업심사대 상자
	공직유관단체	안전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 업무 수행기관	205개	
	사립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 학교	640개	
	종합병원 등	의료법 제3조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법인	507개	
	사회복지법인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이외의 비영리 법인	169개	
특정 분야 (2,745)	합작법무법인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	'20.6.4. 이후 퇴직하는 취업심사대 상자
	초·중등 사립학교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2,540개	
	방위산업분야	방산업체와 최근 3년간 총개수수료(무역거래건당 200\$ 이상) 실적이 있는 군수품무역대리업체	53개	
	식품·의약품 등	식품·의약품등과 관련하여 인증·검사·시험·평가 지정 등의 업무 수행기관	152개	

※ 협회를 제외한 취업심사대상기관은 매년 12월 중 관보에 고시(협회는 6월말 고시)
- 취업심사대상기관은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www.peti.go.kr)"에서 확인 가능



취업심사 신청 및 처리

※ 관련 서식은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www.peti.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경로 : 공직윤리시스템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검색란에 “취업”으로 조회)

- ❶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부터 3년 동안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에게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 또는 취업승인 신청서를 제출
 - ❷ 요청서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5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심사서류를 이송하고
 - ❸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5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심사서류를 이송
- ※ 소속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취업심사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이송
- ❹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송 받은 심사서류를 검토하여 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 또는 취업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심사대상자, 소속기관장 및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지

※ 위원회 개최 3주전 수요일까지 접수되어야 당월 안건으로 심사 가능

※ 위원회 연간 개최일정은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www.peti.go.kr)”에 게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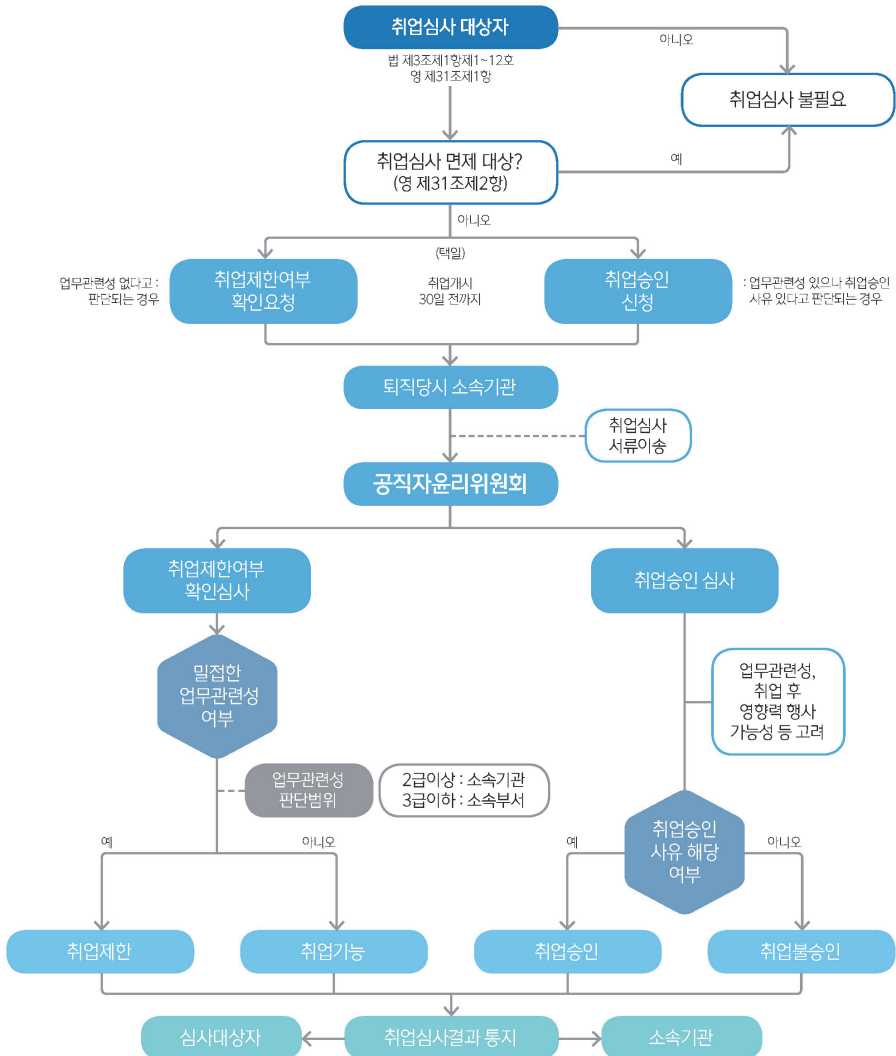
취업심사의 종류 : 취업제한여부 확인 심사, 취업승인 심사

- 취업심사를 신청(요청)하는 단계에서 취업심사대상자가 택일
- 양 심사의 병합심의 가능성 여부 : 부정('19.3.29. 제288회 위원회)
 - 법은 원칙적인 취업제한심사제도와 예외적인 취업승인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그 근본적인 목적·취지와 구체적인 심사기준 등에 차이가 있어, 현행 법체계에서는 일원화나 동시 진행은 어려움

- (취업제한여부 확인 심사)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
- (취업승인 심사)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관련성 정도, 근무현황,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취업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시행령 제34조제3항 각 호)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심사

* 국가안보·대외경쟁력 강화·공공의 이익, 직제개정에 따른 의사에 반한 면직, 국가·지자체 출자기관의 경영개선,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

참고4 취업심사 업무 흐름도



● 우선취업 신청요건

- ①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에게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 ② i)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취업개시 20일 전까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를 이송하지 않는 경우, ii) 취업개시 일정이 앞당겨진 경우, iii) i·ii 외의 사유로 취업 심사 전에 우선취업이 필요한 경우
 - ※ 우선취업이란 취업심사대상자가 법령상의 사전 취업심사 의무를 적극 이행하고자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예외적인 잠정취업을 신청하는 제도이므로, 우선취업이 남용되어 취업제한제도의 취지를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우선취업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

● 신청절차

- 소속기관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청

● 우선취업 여부 결정 및 사후 처리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우선취업 신청요건을 갖추어 신청한 자에 대해 취업개시 일자의 변경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우선취업하게 할 수 있도록 결정하고, 우선취업 신청자,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
 - ※ 일부 업무관련성이 확인되어 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취업 제한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우선취업 결정 불가
- 이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우선취업이 결정된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 제한 여부 확인을 심사하여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인에 대한 취업해제조치를 하도록 요청

취업여부 확인

- (임의취업자 일제조사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 후 3년 동안 관련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 여부를 직접 확인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고, 매년(반기별 1회) 그 점검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

※ 인사혁신처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 여부 조회 결과를 각급 기관에 제공(연 2회)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국세청 기타소득 자료도 일괄 조회하여 제공(연 1회)

- (임의취업자 과태료 부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심사대상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 통보

취업제한 위반자 조치

- 취업해제 조치 및 결과 보고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여부 확인결과 취업심사대상자가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임의 취업 중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인에 대한 취업해제조치를 하도록 요청

※ 휴직자의 휴직상태는 해임요구치 않음('18.8.22. 제280회 위원회)

※ 취업심사 시점에 취업제한기간(3년)이 경과한 임의취업자의 경우에도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취업해제 조치('20.6.26. 제304회 위원회)

-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의 장 등은 해당인이 취업하고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해당인의 해임을 요구
- 해임 요구를 받은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한 후 그 결과를 국가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국가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

● 취업제한 위반자 고발여부 심사

- (대상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또는 취업불승인 결정에 불복하여 위법 취업한 자, 임의취업자 중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결정된 자, 우선취업허가자로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결정에 불복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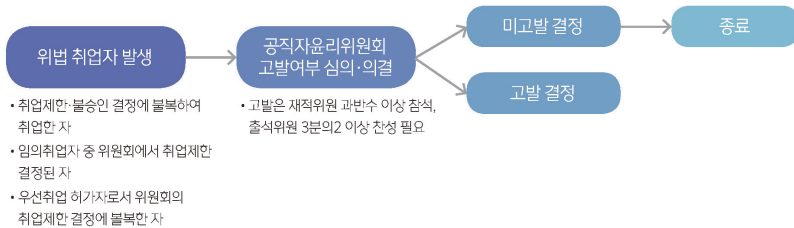
※ 취업심사 시점에 취업제한기간(3년) 경과한 임의취업자의 경우에도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고발여부 심사* 진행('20.6.26. 제304회 위원회)

* 고발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영 제19조제2항제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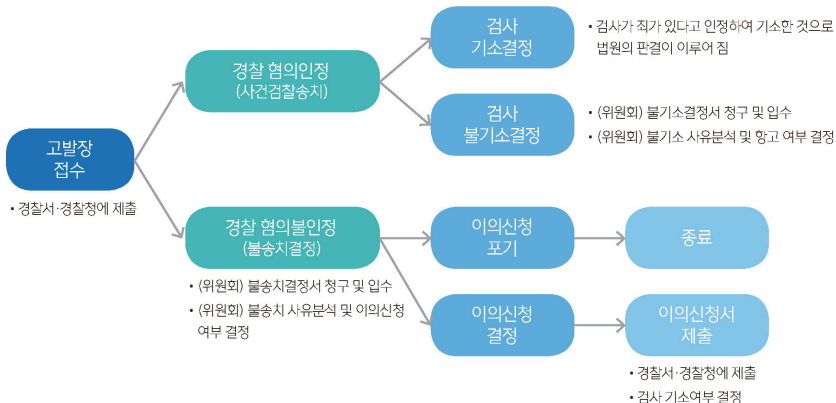
-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참고5 고발여부 심사 업무 흐름도

① 고발여부 심의·의결



② 고발 결정시



1.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국회의원, 국회 소속 공무원
2.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법관, 법원 소속 공무원
3.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헌법재판소재판관,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5.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시·군·구의회의원, 시·군·구의 4급 공무원
6. (시·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시·군·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시·군·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7.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교육위원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8.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직자 외의 공직자와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This conceptual illustration depicts a network of business activities. At the top left, a person sits atop a large blue and yellow hourglass. To their right, another person works at a desk with a laptop. Further right, a person stands on a ladder reaching up to a massive golden clock face. Below the hourglass, a person sits on a large blue gear. In the center, two people interact with a large digital screen displaying a pie chart. To the right of the screen is a potted plant. Further right, a person works at a desk with a laptop, with a speech bubble above them. At the bottom, a person stands on a stack of boxes next to a laptop, while another person sits on a small blue platform nearby. The entire scene is interconnected by a series of thin blue lines, symbolizing workflow and communication. Various icons like a folder, a cloud, and a gear are also present, representing different aspects of business operations.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기준

1. 작성근거
2. 심사방향 및 기본원칙
3. 밀접한 업무관련성의 범위
4. 취업심사대상자별 심사기준
5. 취업심사대상기관별 심사기준
6. 취업승인 심사기준





II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기준

검토 배경

- 세월호 사고('14.4.16)를 계기로 민-관 간의 업무유착 폐해 근절 등을 위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강화(공직자윤리법 시행, '15.3.31.)에 따라 재취업 심사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
- 이후 살충제 계란 사건('17년), 공정위 불법취업 사건('18년) 등을 계기로 하여 재취업 심사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강화

1 작성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1항제3호 내지 제4호, 제4항 및 제6항
- 법 시행령 제22조(정부윤리위원회의 운영규정)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정부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윤리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에 관한 사항
 - *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재산등록 사항의 심사 등
- 관련 대법원 판례 및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특별의결사항

2 심사방향 및 기본원칙

- ❖ 민관유착 가능성이 있는 분야는 재취업을 엄격히 제한하되 공직에서의 전문성 활용과 민간에서의 성장·발전을 위한 재취업은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허용
-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는 퇴직공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권리 등 사익과 취업 제한으로 인한 공익을 비교衡量하여 공정하게 심사

-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업을 제한

- 민간근무휴직자가 복직 후 일정기간 근무하고 퇴직하여 민간근무휴직을 하였던 해당 기업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봄
- 특정 관리·감독기관의 퇴직공직자가 특정 취업심사대상기관에 관행적으로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예정직위가 민간전문가로 대체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는지 여부 등 엄격히 심사('19.3.29. 제288회 위원회)

- 업무관련성이 일부 인정되나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 처리 등의 건수, 업무의 빈도 및 비중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여부 결정
- 전문지식, 자격증, 근무경력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인정되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는 취업을 허용
- 업무관련성은 적으나 과거 민관유착, 비리사건 발생 사례가 있는 등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과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 여부를 결정
- 업무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업을 허용

3 밀접한 업무관련성의 범위

- *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인 경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봄
- * 파견근무자는 파견된 기관·단체에서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 보조를 제공하는 업무(법 제17조제2항제1호)

- 퇴직 전 5년 동안 담당했던 업무가 취업예정업체와 관련하여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
 - 재정보조 등의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지원기준평가항목 등 결정
 - 신청서 접수·심사
 - 보조금액 등 확정·지급·정산 및 후속조치(평가감사) 등

취업제한 사례

- ▶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 (주)대구은행 사외이사
 - 취업예정업체의 법정출연금 1,170억원 및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담보대출 5조 5,111억원과 신용보증기금의 취업예정업체에 대한 예치금 2,200억원 및 보증채무 이행청구로 2,607억원 대위변제
- ▶ 교육부 정책보좌관 → 명지대학교 국제교류팀장
 - 고교정상화 기여대학 선정사업(지원금 9.2억원)과 BK21 플러스 사업(사업비 2.8억원을 지원), 공학교육혁신지원센터 사업 등의 대상기관으로 취업예정기관을 선정(사업비 2억원 지원)
- ▶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 → (사)대한LPG협회 회장
 - (사)대한LPG협회가 환경부 환경R&D 사업의 친환경자동차 기술개발 관련 공동수행자(참여기업)로 선정되어 연구비 지원(63억원)
- ▶ 경기도 의정부시 부시장 → 신한대학교 문화콘텐츠사업단 부단장
 - 신한대학교와 “2014년 의정부 평생학습 Talk Talk 포럼 운영계약(지원금 4백만원)” 등 위탁사업 6건과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 등 센터위탁운영 5건, “2014년 성평등기금 지원 사업” 연구용역 1건 계약
- ▶ 충청남도 자치행정국장 →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 보령시에서 지역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명목으로 보조금(1건, 30백만원)을 지급

2.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법 제17조제2항제2호)

- 퇴직 전 5년 동안 취업예정업체를 대상으로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의 어느 하나의 업무를 취급하였을 경우는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

- 신청서 등 접수
- 인·허가 등을 위한 조건 충족여부 검토·확인·시험평가
- 인·허가 등 의사결정
- 인·허가 등 관련 사후 관리·감독 등

취업제한 사례

- ▶ 대구광역시 안전행정국장 →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사무처장
 -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에서 대한건설협회(회원사 포함)에 대하여 건설업 면허 교부 등의 업무 수행
- ▶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 한국해운조합 경영본부장
 - 퇴직 전 5년 동안 포항·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재직 시, 선원해사안전과에서 한국해운조합 회원사인 (주)대아고속해운·(주)동방·(주)한진·(주)일신해운·(주)정도산업에 대하여 선박안전관리체제 인증 심사, 사업계획변경인가 등을 처리
- ▶ 경찰청 경남거제경찰서 생활안전과장 → 지에스엠(주) 이사
 - 거제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재직 시, 해당부서와 취업예정기관 간 화약류 사용허가 2건 및 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 선임 신고 10건을 처리

3.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법 제17조제2항제3호)

- 퇴직 전 5년 동안 취업예정업체를 대상으로 생산방식·규격 등 검사·감사계획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의 어느 하나의 업무를 취급하였을 경우는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

- 검사·감사계획 등의 수립
- 검사·감사반 편성 및 참여
- 결과처분 검토 및 결과처분 통보
- 후속조치 등

취업제한 사례

- ▶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장 → 롯데제과(주) 사외이사
 -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재직 시 소속기관에서 롯데제과(주)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검역(207건, 16,481톤) 및 소독(29건, 5,112톤) 실시
- ▶ 경기도 소방안전본부장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원장
 - 전북 및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장 재직 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험물탱크 완공 검사” 2건(3백만원) 및 “이중벽탱크 안전성능검사” 155건(1.65억원) 위탁과 “신규 소방차량에 대한 소방장비 정밀점검 11건(9백만원)”을 의뢰
-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이사장 → 미래고속(주) 부사장
 - 소속부서에서 미래고속(주)의 여객선 국제통수확인서를 변경·발급해주고 여객선 특별안전점검 실시
- ▶ 국방기술품질원 품질인증원 수석연구원 → ㈜광림 고문
 - 소속부서에서 취업예정기관에 대해 군수업체의 품질경영시스템을 심사하고 적합할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는 업무인 국방품질경영체제(DQMS) 인증의 갱신 심사를 진행
 - * DQMS 접수, 심사, 갱신 및 사후관리심사를 방위사업청장이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위탁하였으며, 인증업체에는 인센티브가 존재

4.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법 제17조제2항제4호)

- 퇴직 전 5년 동안 취업예정업체를 대상으로 조세의 조사·부과·징수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의 어느 하나의 업무를 취급하였을 경우는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
 - 조세의 조사계획 등 수립
 - 대상 업체 선정
 - 조사인력 편성
 - 조사, 조사결과 정리 및 확인
 - 조세의 부과·징수(결손처리 포함) 등

취업제한 사례

- ▶ 울산광역시 울산시 북구청장 → 현대자동차(주) 울산공장 기술기사
 - 북구청장 재직 시 현대자동차(주)에 법인세, 지방세 등 2,281건/3,721억원 부과·징수
- ▶ 국세청 성동세무서장 → ㈜디피앤케이 비상근감사
 - 성동세무서장 재직시 근로소득세, 부가세, 법인세 등 17건/3억3,256만원 부과·징수하고 이 중 부가세 2,895만원은 환급처리
- ▶ 외교부 주인도네시아대사관 특명전권대사 → 현대자동차㈜ 자문역
 - 서울특별시 국제교류담당관(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재직시 취업예정기관과 부동산 취득세 이의신청 조서 및 의견서 제출, 지방세 이의신청 결정 통보 등의 업무내역이 확인됨
- ▶ 관세청 청주세관 충주세관비즈니스센터장 → 한국관세물류협회 계약직
 - 여수세관 조사심사과장 재직시 한국관세물류협회 10개 회원사에 대해 5,465건(3조 1,137억원)의 관세를 징수하고, 131건(296억원)의 환급을 결정·지급

5.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법 제17조제2항제5호)

- 퇴직 전 5년 동안 취업예정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의 어느 하나의 업무를 취급하였을 경우는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
 - 기본(사업)계획 수립
 - 규격 등 검토
 - 제안서 검토·평가
 - 입찰 및 계약체결
 - 계약에 따른 사업관리(감독·검사·검수 등)
 - 대금지급
 - 후속조치(평가·감사 등) 등

취업제한 사례

- ▶ 한국전력기술(주) 경영관리본부장 → (주)그린씨에스 대표이사
 -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장 재직 시 경기지역본부와 (주)그린씨에스 간 고객센터 운영 용역 계약 관계가 약 3개월간 유지(계약은 부임 전 체결)
-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장 → 한국신제품인증협회 본부장
 - 요청인이 조달청 구매사업국 자재장비과 재직 시 한국신제품인증협회에 소속된 취업심사대상 회사 중 2개 업체와 총 92건의 계약 체결, 요청인이 서울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장 재직 시 한국신제품인증협회에 소속된 취업심사대상 회사 중 9개 업체와 총 98건의 계약 체결
- ▶ 국방부 정보사령부 정보단장 → LIG넥스원(주) 전문위원
 - 777사령부 참모장 재직 시 소관부서에서 LIG넥스원(주)과 MW망 신호변환카드 등 3건의 구매 계약(3건, 1.11억원) 체결
- ▶ 농협중앙회 전무이사 → 삼일회계법인 상임고문
 - 상호금융 및 교육지원 부문 임원 재직 시 “농협중앙회 수의관리시스템 구축용역” 등 총 5건의 컨설팅 용역(14억 1,170만원) 수행
- ▶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 → 한국첨단안전산업협회 상근부회장
 - 본부대기시 국민안전처와 한국첨단안전산업협회 회사 간 “국민안전처 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 상황실 구축 상세설계 및 컨설팅 용역(5억원)”을 조달 계약
- ▶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원장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원장 재직 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주한 ‘가뭄대응 중소하천 물 부족 위험도 평가를 위한 테스트베드 상세 물이용체계 조사’ 용역 2건(766백만원)을 수주
-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장 → 한국농어촌공사 일반계약직
 -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장 재직 시 한국농어촌공사에 보상업무 위·수탁가능 협약 체결 가능여부를 조회한 문서수발신 내역이 확인(체결은 심사대상자 퇴직 후 완료)
- ▶ 국방기술품질원 육군중령 → 국방과학연구소 전문계약직
 - 방위사업청 재직 시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하고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추진한 사업의 설계자료검토 및 회의에 2차례 참석한 사실이 있음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법 제17조제2항제6호)

- 퇴직 전 5년 동안 취업예정업체를 대상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감독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의 어느 하나의 업무를 취급하였을 경우는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
 - 검사·감독 등 계획 수립
 - 검사반 등 편성 및 참여

- 심리·처분 검토
- 결과 통보 및 사후관리 등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감독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경비업법(경찰청) 등

- 다만, 법령상 감독부서가 아니라 그 감독부서의 개별적·구체적 업무위임에 따라 감독부서가 감독권한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일정한 수입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봄 (대판2009도4673)

취업제한 사례

- ▶ 전북지방경찰청 익산경찰서장 → (주)에스원 호남본부 상근고문
 - 경비업법에 따라 (주)에스원 호남지사에 대해 관내 경비업무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거나 직접 지도·점검 수행(전주지사 2회, 군산지사 2회, 익산지사 4회)
- ▶ 관세청 용당세관장 →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상무이사
 - 인천세관 통관국장 재직 시 (사)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의 회원사 13개 업체와 수입신고 28,714건(수입금액 30,823억원) 수리, 그중 6개 업체 57억원 감면 승인
- ▶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장 → 부산교통공사 기획본부장
 - 부산시 북구 부구청장 재직 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부산교통공사에 대하여 ①도시철도역사 부산시 보급방독면 관리실태 점검 ②금곡역 지하보도 내 조명시설 추가설치 요청한 사실 및 세무과에서 부산교통공사에 지방세 체납자의 도시철도 채권 압류 통지 및 추심 의뢰(17건)
- ▶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 → (주)KB국민카드 상근감사위원
 - (주)KB국민카드에 대한 승인·검사·감독·사건조사권을 가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감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감사원이 (주)KB국민카드와 관련한 시민단체의 공익감사청구에 대하여 피감기관을 감사하고 피감기관에 주의 및 통보처분을 하였으며, 피감기관이 후속조치로 (주)KB국민카드에 대해 검사 실시, 영업정지 처분, 과태료처분, 관련자 처분요구 등을 한 사실
- ▶ 미래창조과학부 감사담당관실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공감원스튜디오센터장
 -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감사팀 재직 시 소속부서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대상으로 종합감사 결과보고 및 처분요구, 협회로부터 감사처분요구사항 이행완료 보고 등 관련 업무 처리
- ▶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심의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청렴시민감사관
 - 제도개선총괄과장, 일반직고위공무원으로 재직 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민원처리제도, 청탁 금지제도, 기관 평가, 제도개선 권고 등과 관련된 문서수발신내역 88건이 확인됨
-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1급 → (주)엠디엠 부사장
 - 기관업무기준 심사대상자로서 (주)엠디엠으로부터 외부감사인 선임, 재무제표 및 지배주주의 소유주식 현황 등을 총 7회에 걸쳐 보고받음
- ▶ 행정안전부 재난영향분석과장 → (주)도화엔지니어링 부사장
 - 재난영향분석과장으로 재직 시, 취업예정기관에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에 대한 변경등록, 운영 실태·기술인력 현황 제출 및 현황점검 안내 등 총 10건의 업무처리내역이 확인됨

7.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법 제17조제2항제7호)

- 퇴직 전 5년 동안 취업예정업체가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의 어느 하나의 업무를 취급하였을 경우는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

- 취업심사대상기관(법인·단체 등)과 그 대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의 수사, 조세·특허·공정거래 등에 관련된 사건의 심리·심판·심결 등

※ 취업심사대상기관이 피해자인 사건 수사와 관계되는 업무도 포함

취업제한 사례

- ▶ 법무부 법무연수원장 → (주)포스코건설 비상임법률고문
 - 대구고검 차장검사 재직 시 (주)포스코건설 관련 행정소송 2건, 서울고검 검사장 재직 시 (주)포스코건설 관련 행정소송 2건 계류
- ▶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 근로복지공단 급여재활이사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부산 등 기타 지방노동위원회,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근로복지공단 간 부당해고 구제심판 1심·재심 사건, 산재요양급여신청 이력조회 자료요청 등 업무처리
- ▶ 금융감독원 법무실 연구위원 → 동부증권(주) 상근감사위원
 - 법무실 연구위원 재직 시 동부증권(주)과의 과징금부과 처분취소 관련 행정소송이 1건 존재하고, 취업심사 당시 대법원에 계류
- ▶ 경찰청 대전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과장 → (주)골프존네트웍스 비상근고문
 - 대전둔산경찰서장 재직 시 (주)골프존네트웍스가 피해자인 고소사건 2건 처리, 취업심사 당시 이 사건에 대해 대전둔산경찰서에서 가해자를 입건하여 조사 중에 있음이 확인
- ▶ 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총무과 → 현대중공업(주) 감사실 부장
 - 울산지검 공안부 재직 시 소속부서에서 현대중공업(주)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사건 2건을 수사·처리한 사실 확인
-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정책보좌관 → 법무법인 울촌 전문위원
 - 취업예정기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한 소송 수임사건 1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의무고발을 요청받은 기업의 대리인으로서 수임받은 사건 대응 7건의 업무내역이 확인

8.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법 제17조제2항제8호 및 시행령 제32조제2항)

- 퇴직 전 5년 동안 취업예정업체의 유무형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의 어느 하나의 업무를 취급하였을 경우는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
 - 정책 등의 수립·조정·시행·평가·감사·후속조치·제도개선 반영 등과 직접 관련된 업무의 처리
 - 정책·사업 등의 검토·결재 또는 안전 검토·심의 등을 위한 회의참석 등의 의사결정 관여
 - 검토의견 제출 등 업무처리 협조, 정책건의·반영, 민원처리 등 다양한 형식·모습으로 특정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취업제한 사례

- ▶ 금융감독원 국장조사역 → 연합자산관리(주) 감사
 - 연합자산관리(주)에 대하여 증권신고서 심사 12건, 사업보고서 등록 16건, 업무집행사원(GP) 등록 3건, 기업재무안전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록 3건, 업무수탁회사 점검 1건 등 총 38건의 업무 처리, 연합자산관리(주) 임원이 기업구조조정 정책과 관련하여 금융위원장 주재 금융회사 임원 간담회 및 금융감독원장 주재의 기업구조조정 간담회에 참석
-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 → 법무법인(유한) 윤촌 상근고문
 - 방송통신위원회 및 서울대학교 재직 시 소속기관이 법무법인 윤촌으로부터 고문·법률자문·협찬(후원)·소송관련 서비스를 제공 받음
- ▶ 한국철도공사 여객사업본부장 → ㈜현대아이파크몰 상임이사
 - 안전본부장 및 여객사업본부장(상임이사)으로 재직 시 소속기관이 ㈜현대아이파크몰로부터 임대료, 자산개발 수익금 등(총 32억 43백만 원)을 받고, 역사 내 시설물 소유자로서 시설변경 등에 관하여 승인 및 협조하였으며, 주주(9.9%)로서 주주총회에 참여하고 안전 의결(3회)
- ▶ 인천광역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 김장법률사무소 상근고문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재직 당시 김장법률사무소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피고로 하는 사건을 수임, 청장 재직 당시 수행했던 사업인 '송도국제도시 11-1공구 공유수면매립공사'건에 대해 현재 김장법률사무소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피고로 사건을 수임 중인 것으로 확인
-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회장 →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사무총장
 - 퇴직 전 3년간 회장으로 재직하였던 협회와 소프트웨어공제조합 간 회원사가 일부(25개) 중복되고, 해당기간 소프트웨어공제조합에서 중복되는 회원사 25개 중 21개사에 대해 보증 수행
- ▶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 무인사업부장 → 금융보안원 감사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로서, 방위사업청 기획조정관으로 재직 시, 방위산업집중개발사업의 일자리과에서 금융보안원의 사원사인 NH농협은행에 대해 "방위산업 이차보전 용자사업"의 명목으로 2020년 1~3분기 이차보전금 3,583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 한국전기연구원 원장 → ㈜티엘비 기술고문
 - 한국전기연구원 원장으로 재직 시, 취업예정기관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됨

(1) 2급 이상 공직자(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적용대상자

● 공무원

- 재산공개대상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급 이상의 공무원
- 2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 2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지도관·장학관·교육연구관 및 그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 고등검찰청 부장검사·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및 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의 지청장·직위의 검사, 소장 이상의 장관급 장교,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소방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 공직유관단체

- 이사·감사* 이상의 상근임원
 - * 그 명칭에 상관없이 이와 같은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
- 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금융감독원·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의 1급 이상의 직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원
 - *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전력기술, 한국전력공사(원전분야), 한전KPS(원전분야)

업무관련성 판단범위

● 중앙행정기관등*의 본부·본청에 소속하였던 경우

-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
- 중앙행정기관등의 업무. 이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업무를 포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소속기관*

* 소속기관, 직속기관, 지사무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의 관장사무 지원 또는 소관사무 분장을 위하여 두거나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두는 기관 등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책임운영기관

③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④ 공직유관단체 소속기관

● 중앙행정기관등의 본부·본청의 소속기관에 소속하였던 경우

- 해당 소속기관의 업무

※ 다만, 중앙행정기관등의 본부·본청에 소속하였던 경우의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소속기관, ②책임운영기관, ③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 ④공직유관단체 소속기관에 소속하였던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과 그 하급기관의 업무를 포함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에 해당하는 기간에 2급 이상*과 3급 이하**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에 해당하는 업무의 범위를 적용

* (법 제17조제3항)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하여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 (법 제17조제2항)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참고7 재산공개자 현황 (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24조)

1.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등 국가의 정부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부직공무원
 3. 1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4. 직무등급12등급이상 14등급이하 또는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보직 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5.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
 6. 중장이상의 장관급 장교
 7. 교육공무원중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은 제외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위원
 8. 치안감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지방경찰청장
- 8-2.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9. 지방국세청장 및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10.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채용된 임기제공무원. 다만, 제4호·제5호·제8호 및 제9호 중 직위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직위에 채용된 임기제공무원만 해당된다
 11.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12. 정부, 지자체가 200억원이상 출자·출연(재출연포함)·보조하는 기관·단체의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자체장이 임원을 승인·선임하는 공직유관단체 중 100억원이상의 출자·출연·보조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이나 대통령이 임명하는 기관·단체의 장
 1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별정직 상당하는 직위의 연구관·지도관·장학관·교육연구관 및 그 임기제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임원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직에서 퇴직한 사람(제6조제2항의 경우에만 공개한다)

(2) 3급 이하 공직자(부서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적용대상자

공무원

- 3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재산공개대상자, 2급 이상의 공무원 등 기관 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공직유관단체

-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으로서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업무관련성 판단범위

과(이에 해당하는 부서 포함)의 장 및 소속 직원의 경우

- 해당 과의 업무

과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 직제·정관·규정 또는 직무 상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업무

* 국장은 국 전체의 업무, 실장은 실 전체의 업무

심사대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재산등록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그 소속하였던 부서에 포함하여 심사

- * (법 제17조제1항)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음

(1) 영리사기업체

 다음의 경우에는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 심사대상자가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하려는 영리사기업체 간에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심사대상자가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과 법령상 검사·감독, 감사, 시정조치 등 상시적인 업무관계에 있는 경우로서 유착관계 발생이 우려되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다만, 조달계약에 따른 물품 등 구매, 출자·출연, 보증, 주주권 행사 등 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재량의 여지 없이 행한 경우에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관련성 여부를 판단

*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시행령 제34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나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승인 사항으로 심사

(2) 협회

 다음의 경우에는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하려는 협회 및 그 회원사* 간에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협회(A), ② A협회의 회원사 중 취업심사대상 영리사기업체(B), ③ A협회의 회원사 중 취업심사대상 협회(C), ④ C협회의 회원사 중 취업심사대상 영리사기업체(D) ⇒ ①~④의 업무관련성 모두 파악 필요

-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협회 및 그 회원사 간에 직·간접적인 업무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 정관상 설립목적, 목적사업 등에 회원사의 권익보호를 규정하고 있고 사업계획서 등에서 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회원사의 상호협력, 공동 이익을 위한 영향력 행사에 관계된 사업이 상당한 비중으로 확인되는 경우
 - 부서 또는 기관에서 협회에 대해 상시적으로 관리감독, 시정조치, 임직원 임면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협회는 그 관리·감독기관의 퇴직공직자를 계속해서 채용하고 있어 유착관계 형성이 우려되는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경미한 것으로 판단

-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협회 간에 일회성 계약, 업무위탁 및 재정보조 등 경미한 정도의 업무관련성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 협회의 성격, 목적사업을 고려할 때 교육 등 공익적인 비중이 크고 심사대상자의 근무경력, 자격증, 학위 등이 취업예정 협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으로 인정되는 경우
 - 국가·지자체 등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 또는 법정협회로서 협회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사무를 위탁한 국가·지자체 등의 퇴직공직자 취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결정시 고려사항

- 협회의 성격(임의·법정협회, 공적업무수행협회 등) 및 사업내용
 - 교육·훈련, 컨설팅 등 공익적 성격의 사업 비중,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무위탁 여부 및 관리·감독사항(사업계획·결산·정관변경 승인, 임원선임, 위탁사무 감독 등) 여부 등

협회의 유형(성격)

1. 민법 제32조 등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로서 회원사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협회
 -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2. 위 1호에 따른 협회에 해당하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교육·컨설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협회
3. 위 1호에 따른 협회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 또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임명하거나 임원의 선임을 승인하는 협회
4. 국가에서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정협회

- 협회의 회원사 구성, 회비 납부, 관리·감독기관 퇴직공직자 채용현황, 업계의 권익보호(영향력 행사)를 위한 규제개혁 건의 여부
 - 협회 또는 회원사와의 업무관련성 여부, 회원사와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해당 회원사의 이사회 참여 여부 및 회비액수 등

(3)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다음의 경우에는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하였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 등이 사건을 수임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경우(법 제17조제5항)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가 취업하려는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에 대해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결정시 고려사항

- 해당 업무 처리 등의 건수, 업무의 빈도 및 비중 등
 - 사건 수사·심리·심판, 조세 조사·부과·징수 등 처리사건 수
 - * 법무법인이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사건을 대리하거나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를 상대방으로 하는 자의 사건 수임 여부 포함

- 심사대상자의 업무처리 여부, 업무처리 등에의 관여 여부 등

* 업무의 직접 처리 여부 및 지휘.감독.보고받은 관계 여부, 주요업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업무 등) 여부, 처분의 정도(인.허가, 시정 조치,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부과 액수) 등

- 경찰(해양경찰 포함) 퇴직자 관련,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일부 사건에 대해 검사의 지휘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점

[4] 시장형 공기업 및 공직유관단체*

* 안전감독, 인·허가, 조달 업무 수행 공직유관단체 및 취업심사대상 사기업체 등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협회형 공직유관단체·기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민관유착 우려가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의 재취업은 원칙적으로 제한

 공모를 통한 전문가 영입,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경미한 것으로 판단

* 아래의 경우로서 업무관련성이 밀접한 경우에는 취업승인 사항으로 심사 하되 ❶호의 경우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3호를, ❷호의 경우는 같은 항 제8호를 적용하여 심사

- ❶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재출자 제외)한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대주주 등으로서 주주권 행사 등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경영 참여가 필요하고 업무유착 가능성이 적은 경우

* 모회사(취업심사대상기관의 지분 50% 이상 소유), 최대 출자자(30% 이상 소유) 또는 대주주로서 주주협약을 통해 이사 등의 추천권을 행사하는 경우 등

- ❷ 심사대상자가 공직유관단체의 안전감독, 인·허가, 조달 업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직위에 취업하려는 경우로서 업무유착의 가능성이 적은 경우

 다만, 취업심사대상 사기업체가 취업심사대상 비영리법인등이 아닌 공직 유관단체로 지정될 경우, 이미 고시된 취업심사대상 공직유관단체가 공직 유관단체에서 지정 제외된 경우에는 즉시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제외함

※ (의결사례)

- (사기업체) “한국증권금융” 관련 의결사항(제242회 위원회, ‘15.7.24.)
- (공직유관단체) “한국해양구조협회” 관련 의결사항(제303회 위원회, ‘20.5.29.)

(5) 사립대학, 종합병원, 사회복지법인 등

 다음의 경우에는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 (사립대학 등)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에서 취업심사대상기관에 대한 인·허가, 구조 조정, 재정지원사업, 감사, 평가, 감독 등에 관계되는 업무가 있는 경우
- (종합병원 등)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에서 인·허가, 연구비 지원, 평가, 법령상 감독 등에 관계되는 업무가 있는 경우
- (사회복지법인 등)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에서 취업심사대상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출연, 시설자금 지원 등), 감독 등에 관계되는 업무가 있는 경우

※ 퇴직공직자가 의대교수로 복직(재취업)한 후 관련법령에 따라 협력병원에서 수당을 받고 진료교수(병원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로 겸직하는 것은 법 제17조의 취업행위로 보지 않고 취업심사대상에서 제외함(‘17.3.31. 제263회 위원회)

(1) 일반원칙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업무관련성, 심사대상자의 퇴직 전 근무현황,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취업을 승인할 특별한 사유가 인정 되는지 여부를 심사·결정
- 취업승인제도가 밀접한 업무관련성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취업을 승인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 취업예정 직위에의 대체 가능자의 수, 취업예정 기관과의 경쟁관계에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존재 등 취업승인의 필요성과
 - ※ 특정 관리·감독기관의 퇴직공직자가 특정 취업심사대상기관에 관행적으로 재취업하는 경우 취업예정직위가 민간전문가로 대체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는지 여부 등 엄격히 심사('19.3.29. 제288회 위원회)
 - 심사대상자가 취업하는 경우 업무유착 우려 등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의 부작용 측면과 취업을 승인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취업승인으로 얻어지는 이익이 훨씬 큰 경우에 한해 취업을 승인

(2)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 적용범위

※ 위 일반원칙에 따라 모든 취업승인 사유(1~9호)에 대해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인지 여부를 심사

1.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시행령 제34조제3항제1호)

- 외교·통일·국방·정보·과학기술 및 경제 분야에서 국가안전보장, 방위력개선,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취업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제시장에서 산업이나 기업이 경제적으로 경쟁하거나 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로서 취업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취업승인 사례

- ▶ 국방부 공군작전사령부 부사령관 → 한화테크윈(주) 전무
 - 공군에 재직하면서 형성된 외국공군 고위직 인적네트워크, 전투기 운용경험 및 전문지식 등이 노후화된 공군전투기를 첨단 한국형전투기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기엔진 개발 및 부품 국산화율을 높이는 데 필요
-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장 → 항로표지기술협회 본부장
 - 해외 유무상 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경우 해양교통시설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이전하고 이에 따라 수출지원 및 개도국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국적 향상 및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
- ▶ 미래창조과학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 한국원자력연구원 아태원자력협력협정사무국장
 - 우리나라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아태지역 주도권을 유지·강화하여 원자력 전문인력의 해외 진출, 원전수출 기회의 확보, 국제기구에서의 역할 확대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아태지역 RCA회원국에 원전기술의 홍보 및 우호적 여건 조성에 일조할 수 있는 직위로의 취업이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에 도움
- ▶ 한국도로공사 건설본부장 → 삼성물산(주) 상근고문(해외사업)
 - 특허 23건은 신청인이 한국도로공사 재직 시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특허로 특허권자는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이며, 신청인은 공동발명자로 참여(23건 전체 공동발명)한 것으로 도로·교통분야 신기술개발 등으로 국내·해외시장 개척에 경쟁력이 있을 것

2. 직제와 정원의 개정·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시행령 제34조 제3항제2호)

- 정부조직법, 그 밖의 국가행정기관 설치 법령,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기구의 개편, 직제(그 소속기관 포함)의 개정·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된 자

취업승인 사례

- ▶ 한국광해관리공단 경영전략 본부장 → 한국광해광업공단 경영관리본부장
 - 한국광해관리공단 경영전략본부장으로 채용(임기 2년, '20.5.18.~'22.5.17.)되었으나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합병되어 취업예정기관인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설립됨('21.9.10.)에 따라,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부칙 제7조에 의해 신청인의 임기가 종료됨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시행령 제34조제3항제3호)

● 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출자·재출자하는 경우로서

- 적자(순손실)가 발생하여 경영개선이 특히 필요한 경우
- 공공기관 경영평가* 미흡이하 등급(D~E등급)을 받거나 구조적인 비리 발생 등 경영개선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경영관리, 사업성과 평가(S-탁월, A-우수, B-양호, C-보통, D-미흡, E-아주미흡)

취업승인 사례

▶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

-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4조에서 공단의 자본금은 3조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부칙 제8조에서 종전의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출자한 재산은 공단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 한국광물자원공사 '16~'20년 경영실적은 'C~E' 등급이며, '16년 부터 투자사업 손상차손 및 이자비용 등으로 당기순손실 및 자본잠식 중인 상황임('16년 말 부채비율 10,453%, '17년부터 부채비율 산정 불가), 신청인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사장으로 2016년 부임 후, 그 동안 지속되어오던 재정 적자를 극복하고자 “구분재무제표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경험을 고려할 때 취업예정기관의 경영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전자부품연구원 원장 →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 자부품연구원 원장 재직 시 직전 3년 연속 적자였던 기관을 경영효율성 강화(경상비 절감, 임금인상을 억제)를 통해 흑자로 전환시킨 바 있고, 글로벌 컨설팅 기관인 토크스 로이터에 의해 100대 혁신기관으로 선정되고('12.10.) 세계표준의 날에 대통령 기관 표창('13.10.)을 받는 등 경영개선 능력이 인정된다고 보이는 바 신청인의 취업이 현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영개선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임

▶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 인천항만공사 사장

- 인천항만공사는 비핵심 자산의 매각과 투자유치가 원활하지 않아 공사채 발행이 증가하여 '13년 이후 공사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하락('12년 A→'13년 C→'14년 B →'15년 C) 추세로 기획재정부에서 오랜기간 근무했고, 인천항만공사의 지도감독 기관인 해양수산부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며 종합적인 행정을 처리한 경험이 있으며, 美 미주리 대학에서 MBA과정을 이수하고 경영학 박사과정(중앙대, 조직 및 인사 전공)을 수료한 신청인의 취업은 취업예정기관의 경영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소지자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산업 분야의 발전과 과학기술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행령 제34조제3항제4호)

-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자격기본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소지자로서 그 자격증이 해당 산업분야, 과학기술분야에 직접적으로 활용되고 그 대체 가능자가 많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산업분야의 발전과 과학기술의 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통계, 인적자원개발, 기초과학연구개발, 문화·예술·출판·관광, 자연환경, 상업·공업, 도시·도로건설, 소방, 식품·의약품 등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산업

취업승인 사례

- ▶ 한국수력원자력(주) 품질안전본부장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부이사장
 - 원자력발전기술사 자격증보유자(2016.5.27. 기준 452명이 자격증 보유중)로, 38년간 방사성폐기물 처리 업무(중·저준위 폐기물 처분부지 선정·건설 등)를 수행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성 보유, 고준위 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 처리장은 2026년 포화될 예정으로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마련(국정과제 91번)을 정부에 권고하였고, 신청인은 적기에 부지확보 사업을 추진하는 등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원자력 산업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 ▶ 국방부 육군 제55사단 부사단장 → 한화탈레스(주) 부장
 - 전자기기 기능사 자격증 보유자로, 땅굴탐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4땅굴 발견('90.3.3.)에 일조하였고 방산장비 개발에 상용기술 접목을 제언, 군 장비개발 소요기간 및 비용절감에 기여. 정보통신 관련 지식과 군 지휘체계의 특성을 잘 알고 있으므로 군의 요구성능을 방산장비 개발단계에서 정확히 반영시켜 전력화 기간 단축, 군 통신체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획이사 → 한국가설협회 기획관리이사
 -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취득자로 건설현장안전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할 자격이 있음. 가설구조물 공사는 건설재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신청인은 회원사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 및 가설구조물 안전성능 확보에 대한 기술교육·지원업무를 수행할 예정으로, 이를 계기로 열악한 가설기자재 산업분야가 발전하고 중소기업으로 안전의식이 부족한 협회 회원사의 의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 ▶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기획운영과장 → (주)유신 해외감리사업담당
 - 비행장 활주로 공사 및 환경영향평가 사업을 수행한 경력이 있고 건설설계·감리에 필요한 토목시공기술사 자격증 또한 보유하고 있음. (주)유신은 도로·공항·철도 등의 교통인프라 분야의 타당성 조사·설계·감리업을 운영하는 회사로, 신청인은 취업 후 에티오피아, 네팔 공항건설 감리, 베트남 공항건설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할 예정으로 공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5.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관리인이나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시행령 제34조제3항제5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기업회생절차 중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관리인, 파산관재인, 감사 등으로 선임되는 경우 등

취업승인 사례

-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3급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파견 →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 개방이사
 -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이 정한 개방이사 추천 기한(30일 이내)을 지키지 못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법령규정에 따라 신청인을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 개방이사로 직권으로 추천한 경우임

6. 채용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
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시행령 제34조제3항제6호)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 직위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에 채용(채용계약서 작성)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 * (개방형직위)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운영
 - * (임기제공무원)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
- 민간부문 종사자가 취업심사대상자가 되었다가 다시 민간부문에 재취업하려는 경우에는 위 채용계약에 준하여 심사
- 어느 경우라도 재직 중 채용되기 전에 근무했던 기관과의 민관유착에 따른 일감 몰아주기 등 업무관련성 변화 추이 사전 확인

취업승인 사례

- ▶ 특허청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 → (주)LG유플러스 자문
 - 신청인은 특허청 임용 전 LG반도체(주), LG디스플레이(주), LG전자(주)에서 33년간 특허 관련 업무(특허 등록, 특허소송 및 협상)를 수행하였고, 이와 같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으로 임용되었다가 채용계약 만료 후 (주)LG유플러스 특허분야 자문으로 재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임

7.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시행령 제34조제3항제7호)

- 퇴직 전 5년 동안 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지 않은 소속 직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소속 과에서 취업하려는 취업심사대상기관과 관계된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아니하여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과장은 7호 사유 대상이 아님)

* 이 규정은 과 단위 이하 부서의 소속 직원의 과도한 취업제한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조항('09.11.23.개정)으로 퇴직 전 5년 동안 한번이라도 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었다면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봄이 상당함

취업승인 사례

- ▶ 특별조사국 테마기획조사팀 선임검사역 →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
 - 서울남부지검 형사제5부 및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제2부 재직 시 소속부서에서 처리한 업무와 관련된 사건 3건을 법무법인 광장이 수임한 사실이 있으나, 신청인의 소속 검사실이 아닌 다른 검사실 담당 사건으로서 신청인 담당업무와 관련이 없고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보임
-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기획과장 → 환경보전협회 수변생태관리본부장
 - 환경부 교통환경과 전기차보급 T/F팀장 재직 시 취업예정기관에서 '에코바이크 투어 모바일 맵 개발'등 2건의 용역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있으나, 신청인이 취업예정기관이 수행한 2건의 용역을 직접 담당하지는 않았으므로 과의 소속 직원으로 재직 시 담당업무와 밀접한 관련성 및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보임
- ▶ 부산세관 신청수입과장 → 비아이디씨(주) 관세사
 - 부산세관 통관지원1과 재직 시 비아이디씨(주)가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 자격 갱신을 신청하여 신청인이 검토한 사실이 있으나, 갱신의 경우 고시에서 정한 일정요건만 충족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처리되는 것이므로 밀접한 관련성 및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보임

8.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시행령 제34조제3항제8호)

- 제3항에 따른 기관업무기준(2급 이상 해당) 심사대상자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취업하려는 기관에 대해 처리한 업무의 성격·비중·빈도 등을 고려할 때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 처리한 업무의 처리 빈도 등이 적더라도 퇴직 직위 및 취업 후 담당할 업무의 성격에 따라 영향력행사 가능성이 많을 수 있음

- 제5항*에 따른 심사대상자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하였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법 제17조제2항 각 호(재정보조 업무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등이나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처리한 업무의 성격·비중·빈도 등을 고려할 때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 (법 제17조제5항)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하였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법 제17조제2항 각 호(재정보조 업무 등)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등이 사건을 수임(회계법인·세무법인이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포함)하는 경우 그 심사대상자가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는 해당 법무법인 등이나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공개대상자(1급(고위 공무원 가급) 이상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 등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종의 업종(변호사→법무법인 등)에 취업하려는 경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취업하려는 기관에 대해 처리한 업무의 성격·비중·빈도 등을 고려할 때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취업승인 사례

-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총장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 소속기관에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체결한 계약이 1건인 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회원단체로 가입되어 있지만 회비수입의 비중이 0.7%이고 소속기관에서의 재정지원이 없다는 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로 정부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보임
- ▶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 한국금융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
 - 한국금융연구원에 분담금을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있으나 이는 신청인 재직 전인 91년도부터 납부한 것이며 신청인 재직 기간 동안 한국금융연구원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비상임연구위원은 임기 1년에 재임용이 불가한 점을 고려할 때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은 적음
- ▶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 근로복지공단 급여재활이사
 - 고용노동부 재직 시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총 64,845건 중 근로복지공단 관련 건은 11건으로 그 비중 및 빈도가 적은 점(0.017%), 노동위원회의 의사결정은 공익위원, 근로자 및 사용자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되는 점, 취업 후 담당예정업무가 산재보상국, 재할국 업무 총괄인 점을 고려할 때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은 적음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획이사 → 한국가설협회 기획관리이사
 - 한국가설협회와 처리한 연구용역 계약체결 2건 중 1건은 신청인의 임원 취임 이전 선정, 나머지 1건은 기술이사 관장업무인 점, 한국가설협회에 대한 세미나 임차료 지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강조 주간행사 중 모든 임차비용을 공단이 부담하는 바에 따른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보임
-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및 사무처장 → 법무법인 동인 구성원 변호사
 -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및 부위원장으로 재직 시 취업예정기관이 수임한 행정심판·고충민원 내역이 확인되나, 모두 신청인을 제외한 내·외부의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처리하고, 관련된 사건은 모두 종결되었으며, 구성원 변호사로 취업 예정인 점을 고려할 때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보임

9.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자격증·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시행령 제34조제3항제9호)

- 자격증 소지자가 동종 업종에 재취업하는 경우로서 그 자격증이 취업하려는 분야에 직접적으로 요구·활용되는 경우
 - * 변리사 → 특허법인, 정보처리기술사 → 정보통신업체, 건축시공기술사 → 설계·시공·감리업체 등

- 근무경력, 취득 학위, 연구성과 등을 통해 재취업하려는 직위예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경우
 - * 기술·기능분야에 일정기간 종사한 공직자가 요건을 갖추어 해당 분야 민간부문으로 재취업하려는 경우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
 - *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임직원을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하는 경우
 - * 경찰공무원→보안·경비업체 현장요원 또는 손해보험사 사고조사담당자 등
- 공직에서의 전문성 또는 개인역량을 인정받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스카우트되어 재취업하는 경우
-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일반국민 대상의 채용공모에 응시하여 실적과 자격 등에 따라 선발(합격)되어 재취업하는 경우
 - * 세무공무원→금융기관의 세무상담사, 조종사→항공사 부기장 등

취업승인 사례

- ▶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해상안전시설과장 → 항로표지기술협회 연구원
 - 무선설비 및 전파통신, 고급감리 기술자격증을 소지하였고 공무원 임용 후 25년간 주로 광파표지 및 전파표지 분야에서 근무하였으며 필리핀 ODA사업 관련 필리핀 주요 항만 광파표지 및 전파표지 실태 현장 조사 및 검토분석과 자료작성 등의 업무 수행 예정인 점, 신청인이 퇴직한 지 1년 6개월이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보임
- ▶ 국방부 국군체육부대장 → 한화테크윈(주) 상무급
 - 3훈련비행단장 재직 시 연평균 항공기 가동율 94% 유지, 15만시간 무사고 비행안전기록 등으로 '항공기 엔진'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고, 항공기 엔진성능, 장비운영 및 후속 군수 지원 관련 사용자 요구사항 등을 이해하고 있어 항공기엔진 성능개량 기술자문 역할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무기구매 업무와 관련이 없는 야전부대 위주로 근무하여 방위사업청 및 공군본부 전력업무 담당부서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임
- ▶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 국제특허출원심사1팀장 → 법무법인 세종 송무파트 변리사
 - 특허청에서 20년 특허실용심안 심사 및 심판 업무를 담당하였고, 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전문성이 있다고 보이며 취업예정 직위가 송무파트 소속 변리사로 특허출원이 아닌 법원 소송을 전담할 예정인 점을 고려할 때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임
- ▶ 기획재정부 지역발전위원회 단장 → (사)국제금융센터 원장
 - 한남대 경제학 박사, 미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경제학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학 석사 및 경제학 학사 등 학위 소지, 미 공인회계사 자격증('03. AICPA) 취득과 기재부 대외경제국장, 캐나다 British Columbia 재무성 등 국제금융센터 업무관련분야의 근무경력으로 전문성이 입증되며 국제금융센터의 설립 목적은 금융위기 대응 및 지원이고 최근 10년간 국고보조금 동결, 향후에도 동결 또는 감액될 예정인 점을 고려할 때 영향력 행사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임

[3]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취업승인 하는 경우*

*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

- 직제와 정원의 개정·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제1호)
- 채용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로서,
 - 그 채용계약 시 소속기관장이 전문성·특수성을 갖춘 인력의 원활한 채용을 위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후 채용한 경우 (제2호)
- 전문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 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소속기관장과 협의하여 제3항제9호에 따른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미리 인정한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제3호)
- 취업승인이 안될 수 있는 특별한 사유
 - 공직 채용전 근무했던 기관에 공사·계약 등 일감 몰아주기, 조세 부과·징수 봐주기 등 업무관련성 변화 추이 사전 확인 필요



퇴직공직자 행위제한제도

1. 업무취급제한제도
2. 업무취급승인심사
3. 업무내역서 심사
4. 취업이력공시제도





III 퇴직공직자 행위제한제도

-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고(**업무취급제한**) 퇴직 전 소속기관 공무원과 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알선을 해서는 안 되며(**부정한 청탁·알선 금지**),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됨
- (**업무취급제한의 예외**) 다만,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취급 가능
- ※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18조의2 ~ 제18조의5

1 업무취급제한제도

(1) 본인 처리업무 취급제한 (법 제18조의2제1항)

-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음
- 이 법에서 '직접 처리'란 직제·정관·규정 또는 직무상 공식적으로 수행한 업무로 공문서에 결재·검토·협조한 경우,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서명을 한 경우 등을 말하며, 부서 또는 소속기관이 처리한 업무가 아닌 본인이 직접 처리한 업무만 해당됨
 - 직접 처리한 업무의 범위는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결재단계에 있는 사람에 국한하나, 기관장 등이 문서 등을 통한 형식적인 결재는 하지 않았더라도 회의, 업무 보고 등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있다면 직접 처리한 업무에 해당함
 - ※ 본인이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일정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한 경우라면 취업 심사대상기관인지 여부나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취급위반에 해당함

(2)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업무취급제한 (법 제18조의2제2항)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처리하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2년간 취급할 수 없음
- 퇴직 전 2년간 근무한 기관이 2개 이상이 경우 각각의 기관 모두 해당하나, 퇴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취업(예정)기관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이 아닌 경우 기관업무 취급제한을 받지 않음
- 예를 들어, A부처 고위공직자가 퇴직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취업승인을 받고 B공단에 취업했으나 업무취급승인을 받지 않고 A부처가 B공단에 대하여 처리하는 재정보조, 감독 등을 업무를 취급한 경우 업무취급제한 규정 위반에 해당됨

(3) 업무취급제한 위반자 조치

제재유형	처벌
■ 모든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법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이 직접 처리한 일정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29조제2호)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법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의 일정 업무를 취급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0조제1항)
■ 취업승인을 받고 취업한 취업심사대상자가 법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이 직접 처리한 일정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한 경우	해임 요구 (법 제19조제1항제2호)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법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법 제30조제3항제9호)
■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이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해임 요구를 거부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 (법 제30조제3항제10호)

(1) 신청 및 처리

※ 관련 서식은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www.peti.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경로 : 공직윤리시스템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검색란에 “업무”로 조회)

- ① 업무취급 제한에도 해당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 업무취급 승인 심사대상자*는 제한업무 취급 전(취업 전 또는 후 모두 가능)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에게 업무취급승인신청서와 취업 예정 확인서(또는 재직 증명서 등)를 제출
- ② 신청서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심사서류를 이송
- ③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그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심사서류를 이송
 - ※ 검토 의견서 작성 시 확인사항(영 제35조의2제2항) : ① 신청자가 기관업무기준 취업 심사대상자인지 여부 ② 신청업무가 제한업무(법 제17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국가안보·공익, 영향력 가능성 등 예외사유 인정 여부
- ④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송 받은 심사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심사대상자의 업무취급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심사결과를 심사대상자, 소속기관장 및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지

【 참고 】 업무취급제한제도 실무 기준

- **(‘17.5.24. 제265회 위원회)** 퇴직공직자가 재직 중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 편성·배정·지출되는 재정보조 업무를 직접 처리한 경우

☞ 재직 중 직접 처리했던 해당 업무의 정산 및 보고가 완료·종결되어 더 이상 수정·변경의 여지가 없는 확정된 상태의 업무일 경우, 취업한 기관에서 취급하는 업무의 명칭이나 금액 등이 동일·유사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처리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취급이 제한되지 않음**. 다만, 정량기준 외에 이해충돌 및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도 감안하여 판단

☞ 위 경우 외에는 퇴직공직자가 재직 중 제17조제2항 각 호의 해당 업무를 직접 처리한 경우, 정량 및 정성 기준을 모두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함. 다만, “재직 중 직접 처리한,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제8호 및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대한 판단은 매우 포괄적인 사안이므로, 제7호까지의 업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실무 검토하되 협의·축소 해석을 건지

■ **(‘21.7.23. 제318회 위원회)** 퇴직공직자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예: A부터 퇴직공직자가 의원면직을 하고 B지방자치단체 개방형직위로 재취업 한 경우) 법 제18조의2제1항의 업무취급제한 해당 여부

☞ 민관유착 방지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제도의 입법취지와, 재직 시 축적된 행정경험과 노하우를 국가기관에 활용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퇴직공직자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의2제1항의 **업무취급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

(2) 업무취급승인 사유 및 심사사례 (법 제18조의2제3항)

① 국가안보·공공의 이익 목적 등 해당 업무의 취급이 필요한 경우

- (국가안보) 외교·국방·정보·과학기술 및 경제분야에서 국가안전보장, 방위력 개선, 외교관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업무취급승인 사례

- ▶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 금융결제원
 - 신청인은 경제 및 금융산업에 대한 식견 및 전문성 등을 통하여 금융결제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핀테크·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새로운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
- ▶ 법제처 국장 → 한국법령정보원 원장
 - 신청인은 법령정보제공사업 및 전자법령정보 사업의 지속적 운영으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전자법령을 제공하여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
- ▶ 국방부 대령 → 국방과학연구소 전문계약직
 - 신청인은 해상전력 작전개념 및 운영개념 분석 등을 통하여 국방과학 기술이 적용된 양질의 무기체계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여 국방력 강화에 기여

- (공공의 이익)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 다수 국민의 이익증진, 국제·국내시장에서 산업이나 기업의 경쟁력 제고,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업무취급승인 사례

- ▶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지원관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상근부회장
 - 관광산업의 활성화, 관광산업 보호(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선정, 관광공제회 운영), 사회공헌사업(한국관광장학재단 운영, 관광업계 성금모금 활동) 등을 통하여 공공의 이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장 → 한국지역난방공사 산업안전부장
 -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국제적 통용 수준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체계적인 위험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산업재해 감소 및 생산성 제고, 품질 향상 등을 통하여 공공의 이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획조정실장
 - ICT 혁신성장 인프라 조성을 통해 미디어 중소·벤처기업 육성 확대 등 미디어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전파자원의 관리·활용 강화, ICT 기금운용 및 사업관리 등을 통하여 국민의 편익제고와 공공의 이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2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 ①에 따라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업무 취급 시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불승인된 사례는 아래와 같음

업무취급불승인 사례

- ▶ 국무조정실 사무관 → 손해사정법인 대표이사
 - 제17조제2항 제1호(재정보조)·제5호(용역)에 대한 업무취급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고, 재직 중 처리한 손해사정 용역사업이 진행 중인 상태로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업무취급불승인” 결정
- ▶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 협회 상근부회장
 - 제17조제2항 제5호(연구용역)·제6호(감독)에 대한 업무취급승인을 요청하였으나, 퇴직 전 기관의 연구용역 업무가 진행 중인 점, 정기 감사의 업무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업무취급불승인” 결정

(1) 업무내역서 제출 의무 (법 제1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3)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후 2년간 1년마다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업무내역서를 매년 작성하여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의 확인을 받은 후 퇴직한 날부터 매 1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퇴직 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업무내역서는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의 월별 활동내역과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과 관련하여 취급한 업무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시행령 제35조의3제2항)

(2) 제출 서류

※ 관련 서식은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www.peti.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경로 : 공직윤리시스템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검색란에 “업무”로 조회)

- 퇴직공직자 : 업무내역서(별지 제20호의4서식)
 - 소속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 i) 업무활동내역에 대한 검토 의견서(별지 제20호의5서식)
 - ii)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과 관련한 문서 접수처리 목록(대장) 일체(감사원은 감사실시 목록, 법무부는 수사조사 기록 등 포함)
- ※ 최종 제출서류는 업무내역서, 소속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장의 의견서, 문서 접수·처리 목록(대장) 일체 각 1부임

(3) 심사 기준

① 업무내역서 (*본인 작성)

- 당초 취업심사 시 제출한 취업예정 직위 및 담당업무, 취업 후 활동 계획에 따른 업무활동내역을 월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되어 있는지 확인
- 취업 후 활동에서 당초 예정된 업무분장 및 활동계획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그 사유와 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

- 퇴직 전 2년간 소속하였던 기관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처리한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취급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

※ 법정서식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로 작성 가능함”이 기재되어 있음
 ※ 동일기관으로 재취업하여 그 기관의 업무를 다시 취급하는 경우는 업무취급승인 심사 및 업무내역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함(‘16.1.29. 제248회 위원회)

② 업무활동내역 검토 의견서 (*소속기관 · 중앙부처 작성)

- 취업 후 활동내역을 월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였는지 여부, 당초 예정된 직위, 업무분장 및 활동계획과 상이한 내역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
- 이사·사외이사, 감사, 고문·자문역 등으로 취업한 자는 업무내역서의 회의 참석 세부내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 * 안전명, 회의내용, 자문 건명 및 자문내역 등
- 업무내역서 작성내용이 부실한 경우로 판단되면 본인 및 취업심사대상기관장에게 자료를 추가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공문으로 요구*
 - * 부실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 후 활동에 대하여 구글·네이버 등 인터넷 검색을 활용하여 신문·방송보도, 취업업체 동향 등을 파악
- 퇴직공직자의 전 소속기관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을 상대로 처리한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내역이 있는지를 ‘종합검토의견’란에 기재하고
 - 퇴직공직자의 전 소속기관과 취업심사대상기관 사이에 주고받은 문서접수·처리목록 등 ‘종합검토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첨부되어 있는지를 확인
- 특히, 취업기관에 대한 감사·수사·조사·검사·심판 또는 재정지원 및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기관에 근무했던 퇴직공직자에 대하여는
 - 퇴직 전 소속기관이 취업심사대상기관을 상대로 법 제17조제2항 각 호 관련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는지 조회·확인

● 취업이력공시 대상자 및 취업현황 조사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급 이상 공무원 등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퇴직일부터 10년 동안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매년 조사하여 그 취업이력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공시

*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 공직자윤리위원회 → 취업심사결과

● 공시항목

- 취업심사대상자의 성명, 퇴직일,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직위(직급), 취업한 기관명, 취업일 및 직위(직급)

● 취업사실 신고

- (대상자)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 (시기) 퇴직일부터 10년 동안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
- (제출서류) 취업사실 신고서, 증명자료(재직증명서, 법률자문계약서 등)
- (신고방법) 서면신고 ※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등 이용
- (절차) 퇴직공직자 → 퇴직 전 소속기관장 →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 (위반 시 제재)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취업사실 신고 대장 정리(수시)

● 공시 업무절차

- 취업이력 일제조사 계획 수립(1월초) → 각급 기관에 계획 통보 및 취업이력공시 대상자 명단 제출 요청(1월중순) → 명단 취합 및 검토(1월말) → 직장 가입여부 확인요청 및 통보(2월중순, 국민건강보험공단) → 각급 기관에 직장 가입현황 통보 및 취업사실신고서 등 제출 요청(3월초) → 취업현황 검토 및 취업사실신고서 등 취합(5월말) → 취업이력공시(안) 및 과태료부과 등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안건 작성(6월초) → 위원회 상정(6월말)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취업이력 공시(6월말)



● 일제조사방법

중앙행정기관(관할 공직유관단체 포함), 시·도(시·군·구 포함), 시·도교육청 등에서 취업이력공시 대상자 명단 제출(공문, 공직윤리시스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상자의 재취업 여부 일괄 조회·회신

※ 공직윤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온라인 조회·회신

⇒ 소속기관은 취업사실여부 확인 및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도 교육청을 통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사실신고서 제출

【 참고 】 취업이력공시제도 실무 기준

■ (‘21.6.25. 제317회 위원회)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해당 여부

- ☞ 공직윤리제도 운영의 일관성 유지 및 퇴직공직자의 법정의무 준수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인지 여부는 **퇴직일 당시의 직위 또는 직급으로 판단**

※ (예) 관세청 본부 국장(3급, 부서업무기준) → 지방세관장(3급, 기관업무기준)

■ (‘21.7.23. 제318회 위원회)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 종료 후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취업이력공시 해당 여부

-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자의 취업이력은 퇴직일부터 10년간 누적으로 공시되기 때문에 최초 계약직에 취업한 이력은 그 다음해에도 일반국민이 확인할 수 있어 기존 계약 연장하는 경우에 취업이력을 별도로 공시하는 것은 중복 공시에 해당되며 외부 감시의 효과도 적으므로 **취업이력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

※ 계약직 재계약시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 의결(제313회 위원회, ‘21.2.26.)

참고8 업무내역서 제출절차

구 분	제출서류 및 절차	확인사항	보완조치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 대상자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제출	취급한 업무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소속 기관장	업무활동내역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의 월별 활동내역과 퇴직 전 2년간 근무한 기관과 관련하여 취급한 업무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였는지 여부	업무내역서를 확인하여 업무 추진사항 누락, 내용이 부실한 경우 퇴직공직자에게 재작성 요청
-----------	--	---	---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	업무활동내역에 취급할 수 없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	업무활동내역에 취급할 수 없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업무내역서 및 의견서를 확인하여 업무 추진사항 누락, 내용이 부실한 경우 재작성 요청
----------------------------------	---	---	---

참고9 공직자윤리법 개정 연혁

연도	법률	시행령	비고
'81.12.31. (제정) *시행 '83.1.1.	○ 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의 취업 승인 근거 ○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2년 이내에 담당하였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 여부	○ 재산등록의무자가 퇴직 후 재취업 시 ○ 자본금 100억원 / 외형거래액 300억원 이상	〈공직자윤리법 제정 배경〉 공직자의 부정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정의를 옹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여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
'93.6.11. (개정) *시행 '93.7.12.	○ 취업제한대상 범위 확대 ○ 취업제한위반자 처벌규정 신설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3급이상 → 4급(일부 6급)이상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연구관, 지도관, 장학관, 교육연구관, 대학의 처장·실장의 직위에 보직된 교수·부교수 ○ 5급·6급(감사원, 국세청, 관세청, 법무부, 검찰공무원) ○ 경정·경감인 경찰 ○ 소방령·소방경인 소방공무원 ○ 정부투자기관 집행 간부	
'01.1.26. (개정) *시행 '01.4.27.	○ 퇴직 전 2년 → 3년으로 연장	○ 자본금 100억→50억, 연간외형거래액 300억 →150억원으로 확대 * 자본금 50억/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강화 * 정부의 부패방지 대책을 입법적으로 구현
'05.11.16. (개정) *시행 '06.1.1.		○ 권한조정 * 부처에서 취업심사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변경 ○ 취업승인 사유의 추가 (6개→7개) * 채용 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 전문지식·기술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 가능	
'06.12.28. (개정) *시행 '07.6.29.	○ 취업심사의 관할 범위 조정 - 지방3급 이상 등 정부공무원 기관 ○ 영리사기업체 등에 자료제출 요구 신설		
'09.11.23. (개정) *시행 '09.11.23		○ 취업승인 사유 중 - 퇴직공직자가 담당하였던 업무를 과의 소속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로 변경	
'11.3.29. (개정) *시행 '11.3.29		○ 우선취업 신청 사유 구체적 명시 및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장에서 관할 공무원로 변경	○ 자의적으로 운영되던 우선취업제도를 중앙행정기관/지자체장→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변경

연도	법률	시행령	비고
'11.7.29. (개정) *시행 '11.10.30.	○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을 퇴직 전 3년→ 5년으로 확대 ○ 취업심사대상기관 확대 - 영리사기업체 +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 사외이사, 비상근자문 또는 고문 등의 직위에 취업하는 것도 취업심사대상 포함 ○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취급한 업무를 영구취급 금지 ○ 재산공개 대상자는 퇴직 후 1년간은 본인이 퇴직 전 1년부터 퇴직 때까지 근무한 기관과 관련된 업무취급금지 및 업무내역서 제출 (1+1 업무 금지) ○ 퇴직공무원(공직유관단체 포함)은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 금지하고 현직공직자가 퇴직공직자로부터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서 신고토록 함	○ 퇴직공직자 취업이 제한되는 법무법인, 회계법인 및 세무법인 등의 규모 확대 - 법무법인, 회계법인 :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 - 세무법인: 외형거래액 50억원 이상 ○ 취업제한여부 및 취업 승인 등의 절차 신설	○ 취업심사대상기관 범위 확대 ○ 재산공개의무자 확대 -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14.6.25. (개정) *시행 '14.6.25		○ 취업심사대상 영리사기업체 규모 하향 조정 - 자본금 50억원→10억원 - 외형거래액 150억원→100억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협회 등 종전 취업심사대상의 예외로 인정되던 협회도 모두 취업심사대상이 되는 협회로 함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강화
'14.12.30. (개정) *시행 '15.3.30.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간을 2년→3년으로 연장 ○ 시장형 공기업, 안전감독, 인·허가, 조달 업무수행, 공직유관단체, 사립대학, 종합병원, 사회복지법인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추가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확대	○ 공직유관단체 등의 규모 및 범위 규정 -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기본재산 100억원 이상 ○ 취업심사 결과 공개 ○ 취업이력 공시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강화
'18.7.2. (개정) *시행 '18.7.2.		○ 협회의 협회도 취업심사대상 협회에 포함됨을 명문화하고, - 취업제한 협회를 매년 6월말까지 고시	○ 취업심사대상기관 대상을 명확화

연도	법률	시행령	비고
'19.12.03. (개정) *시행 '20.6.4.	○ 안전방산사학 분야는 규모에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 ○ 재산등록의무자와 취업심사대상자를 분리 ○ 비상대비예비군부대 지휘 업무 및 단순 집행 업무로서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윤리위가 고시한 업무는 취업심사에서 면제 ○ 취업심사결과 공개 의무화,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를 공개항목에 추가 ○ 임의취업 사실확인을 위한 자료조회 기관을 국세청(기타소득)까지 확대 ○ '취업제한기관'을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용어 변경 ○ 퇴직공직자의 직무관련 청탁알선 신고대상자 확대(청탁알선받은 재직자→누구든지) ○ 행위제한 위반 신고자 보호 강화 및 포상금 지급근거 마련	○ 안전방산사학 분야 범위 규정 ○ 공정위 5~7급, 국과연 수석급 이상 추가 ○ 6~7급 실무직 중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직업표준분류에 따라 서비스종사자,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또는 단순노무종사자로 취업하는 자는 취업심사에서 면제 ○ 취업심사 결과 공개 시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를 공개항목에 포함 ○ 소속기관장이 행위제한 부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마련 ○ 행위제한 위반시 직무참여 배제조치 규정	○ 취업심사대상기관 용어 변경, 범위 확대 ○ 취업심사대상자 조정 ○ 행위제한 실효성 확보
'20.12.22. (개정) *시행 '21.6.23.	○ 취업승인자의 행위제한 위반시 해임요구 근거 마련		○ 행위제한 실효성 확보
'21.9.24. (개정) *시행 '21.10.2.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취업심사대상자 확대(임원→2급이상)	○ 취업심사대상자 확대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매뉴얼

2017년 07월 수정
2017년 09월 보완
2017년 10월 보고
2017년 11월 발행
2019년 01월 재발행
2019년 05월 수정
2020년 06월 수정
2021년 11월 수정



인사혁신처

발행인 I 김우호

발행처 I 인사혁신처(www.mpm.go.kr)

기획 I 윤리복무국 취업심사과

과 장 이경한	사무관 김경종
사무관 최정운	사무관 정한기
사무관 김경수	주무관 임소희
주무관 신현주	주무관 광미경
주무관 공진아	주무관 정혜림
주무관 임지연	주무관 우병재

주 소 I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6층

전 화 I 044) 201-8470~8481